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60 2019년 12월 17일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0월 15일, 정진술 의원 외 13명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12월 17일 상정·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정진술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시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편성의 제한, 교육·
 홍보의 실시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산하기관 등의 1회용품 억제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의2)

-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안 제4조의4)
- 시장으로 하여금 1회용품의 사용억제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5)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 · 구조문 대비표 참조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재효)

가. 개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하 '산하기관 등'이라 함)이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자촉법」이라 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1994년에 제정되었음.
- 안 제2조 서울특별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의2는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서울시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감량을 위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선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 수립대상이 서울특별시와 산하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서울시는 정부합동 '1회용품 줄이기 종합계획 ('19.11.)에 따라 공공부문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임.

안 제4조의4제3항은 시장이 서울특별시와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1회용품의 사용억제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1회용품 제공'은 단어 그대로 서울시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나, 광의적으로는 행사에 참여하는 주체가 서울시 예산으로 구입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 즉 1회용품의 제공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서울시가 개최하는 여러 행사 중 먹거리 장터, 김장담그기 행사 등에서는 불가피하게 1회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상위법인 「자촉법」제10조에서도 1회용품의 사용억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합동 '1회용품 줄이기 종합계획('19.11)'에서도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방안으로 '축제 등에서 1회용품을 자제하도록 제도화'하는 권고 사항을 담고 있는 등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모든 1회용품의 제공 또는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안 제4조의4제3항을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하고 앞서 먹거리 장터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안 제3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에 행사유형별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1회용품을 사용해야 할 경우 친환경재질의 용품으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임.

○ 안 제4조의4제4항은 2019년 4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 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5호)』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며, 안 제 4조의5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게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없 음

7. 수정안 요지

-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하고 서울 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는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관련 번호 1060

제안년월일 : 2019년 12월 17일

제 안 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하고 서울
 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골자

-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도록 함 (안 제4조의4)
-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안 제4조의5)

3. 참고사항: 생략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항제8호 중 "서울특별시 및"을 "서울특별시,"로 한다

안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안 제4조의4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2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개정안
	같음)	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	②	②
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	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가 설립한 공사 > 공단 및 출
	출자ㆍ출연기관 등(이하 "산	자ㆍ출연기관 등(이하 "산하
	하기관 등"이라 한다)에서의	기관 등"이라 한다)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u>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u>
	위한 시책의 수립	위한 시책의 수립
<u>〈신 설〉</u>	제3조의2(산하기관 등의 1회	제3조의2(1회용품 사용억제
	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 수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시장
	립ㆍ시행) ① 시장은 서울특	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별시 및 산하기관 등의 1회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
	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평가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하며, 그 결과를 다음년도
	②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4(자원의 절약 등) ①	제4조의4(자원의 절약 등) ①	제4조의4(자원의 절약 등)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 및 폐기		(개정안과 같음)
물 억제를 위하여 <u>서울특별</u>	<u>서울특별</u>	
시,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	<u>시 및 산하기관 등</u>	

사 > 공단 및 출자 > 출연기관 등(이하 "산하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다회용품(1회용 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을 촉진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 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 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도록 하여야 한다.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 (4) (개정안과 같음) 기관 등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5(자원절약 및 재활용 제4조의5(자원절약 및 재활용 제4조의5(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 · 홍보) 시 촉진에 관한 교육、홍보) --촉진에 관한 교육 호보) (개 장은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 정안과 같음) 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 > 홍보를 촉진. 1회용품의 사용 억제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하 "산하기관 등"이라 한다)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하 "산하기관 등"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으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5 제목 외의 부분 중 "재활용촉진"을 "재활용촉진, 1회용품의 사용 억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 7. (생) <u>〈신 설〉</u>	제2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记 </u>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의 1회 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4(자원의 절약 등)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억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및 출자·출연기관 등(이하 "산하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다회용품(1회용품이 아닌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을 촉진한다. ② (생략)	제4조의4(자원의 절약 등) ①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에 1회 〈신 설〉 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5(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4조의5(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 ` 홍보) 시장은 사업자 및 시민을 대 교육、홍보) ---------- 재활용촉진, 1회용품의 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용 억제-----. 교육 ·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